

국가지정(등록)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						처리기간	
						30일	
신 청 인	① 성명			② 생년월일			
	③ 주소	(전화번호: 032- /휴대전화: 010- -)					
대 상 문 화 재	④ 명칭	김포 장릉					
	⑤ 종류	사적	⑥ 지정 (등록)번호	제202호	⑦ 수량		
	⑧ 소재지(보관 장소)		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(풍무동)				
⑨ 보호구역·보호물							
⑩ 신청사유		인천 검단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허가					
⑪ 현상변경 등의 부분		현상변경허가 범위 내		⑫ 현상변경 등의 내용	허가 기준 내		
공 사 담 당 자	⑬ 성명	인천도시공사		⑭ 기술자·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	124771 ~		
	⑮ 주소						
착 공 및 준 공 예 정 연 월 일	⑯ 착공	2015					
	⑰ 준공	2023					
⑱ 소요 경비				⑲ 재원			
⑳ 그 밖의 사항							
「문화재보호법」 제35조·제56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·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·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. 2014년 8월 13 일 신청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문화재청장 귀하							
※ 구비서류						수 수 료	
1.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(건축계획서,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)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						없 음	
2. 현장사진							